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5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0.

발 의 자 : 정희용 · 백종현 · 고동진
박준태 · 김종양 · 최수진
김선교 · 김기웅 · 김상훈
김성원 · 진종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. 2. 19.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사, 지방공단 등에 취업할 경우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함.

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사기업은 제외됨에 따라 제대 후 사기업에 취업한 군인의 경우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한 군인과 달리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.

이에 제대군인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하여 군인이 제대 후 취업 시 그 근무경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임(안 제16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36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·제2호”를 “제30조제1호·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36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(채용 시 우대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·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. ⑤ (생략)	법률 제2136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(채용 시 우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제30조제1호·제2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